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정비하는 한편, 벤처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동명이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정경제부령 제 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30호부터 제1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

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3호서식

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

별지 제148호서식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49호서식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부터 별지 제15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2호서식]

미신고 숙박업 처분사항에 관한 자료 중 영업자 및 처분내용에 관한 자료

처분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영업장 소재지	처분내용

297mm×210mm[백상지 80g/㎡]

출입항 신고 내역(승선자 명부 포함)

신고인				어선 명세			신고사항						승선자명부			
선주 성명	선주 주민등록 번호	선장 성명	선장 주민등록 번호	등록번호	승선 정원	선적지	일시	출항지	납시장소	신고인 성명	입항 일시	입항 장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고

297mm×210mm[백상지 80g/㎡]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

전자어음 번호	수취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취인 거래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어음금액	발행일	만기일	지급은행 지점	발행인 사업자번호

297mm×210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① ----- ----- ----- ----- ----- ----- -----.
1. ~ 129. (생 략)	1. ~ 12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30. 영 별표 제130호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자료 자료: 별지 제152호서식</u>
<u><신 설></u>	<u>131. 영 별표 제131호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53호서식</u>
<u><신 설></u>	<u>132. 영 별표 제132호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의 거래 정보 자료: 별지 제154호서식</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